

탄소중립·녹색성장 유공자 공개추천 공고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정부포상 계획을 공고하오니 유공자를 적극 발굴·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12일

국무조정실장

□ 포상 규모(안) 및 종류

○ 정부포상 : 11점 내외(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국무조정실장 표창 : 12점

※ 포상 규모는 행정안전부 협의 후 구체적으로 결정

□ 포상 후보자 공적분야 및 자격요건

- (온실가스 감축) 전환·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폐기물·흡수원 등 각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감축수단 발굴 및 적용, 탄소 흡수 및 포집·이용·저장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자(또는 단체)
- (기후위기 적응) 기후위기 감시예측과 적응능력 강화를 위한 대책 수립 및 이행, 연구, 사업운영 등에 기여한 자(또는 단체)
- (녹색성장)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국가경제성장 및 산업발전을 견인하는 녹색 경영에 기여한 자(또는 단체)
- (공정전환)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산업 지원 등에 기여한 자(또는 단체)
- (지자체 탄소중립)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체계 구축, 지역 탄소중립 공간 구현 등에 기여한 자(또는 단체)

- (국제협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외국정부·국제기구 등과 기술협력, 공동조사·연구, 현안대응 등의 국제협력에 기여한 자(또는 단체)
- (국민참여·홍보·교육)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생산·소비 문화 등 녹색생활 실천·확산과 이를 위한 교육·홍보 활동에 기여한 자(또는 단체)
- (정책과제 이행점검)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과제 이행 성과 창출에 기여한 자(또는 단체)
- 포상의 종류별로 다음의 수공기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훈격	훈장	포장	대통령· 국무총리표창	국무조정실장 표창
추천대상 수공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2년 이상

□ 포상 후보자 추천 ※ 「2026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름

- 추천자 : 개별 기관·단체 및 국민 개인 누구나 추천 가능
- 추천방법 :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

* (이메일) jomee1220@korea.kr

** (우 편)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3차 3층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사무처 이행점검총괄과)

- 추천기한 : **2026년 7월 10일(금)까지**(우편물은 도착분에 한함)
※ 추천기한 경과 후 이메일 제출 및 우편 도착분에 대해서는 일체 접수하지 않음

- 제출서류 : <붙임> 참조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 대상자로 선정 시 개별통보

- 추천 시 유의사항

- 추천기준 및 대상자의 공적을 감안하여 정부포상과 장관표창으로 구분하여 추천
- 후보자가 개인일 경우, 공적조서 작성 시 소속기관(단체)의 공적사항이 아닌 후보자 개인의 공적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 포상후보자의 포상 제한요건 해당 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

< 재포상 금지기간 > ※ 추천일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될 수 있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천 제한 >

- 일반국민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단체 (※ 단체에 대하여는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하지 않음)
 1.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2.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3.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공개된 체불사업장
 4.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5.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 상세내용은 「2026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www.sanghun.go.kr) 참고

○ 공개검증 및 심사

- 포상후보자(피추천자)가 포상대상자로 선정 시 포상 후보자의 명단·공적 개요 등을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포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 공개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하여 후보자의 소명, 관계기관 조회, 현장확인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공적심의 자료로 활용
- 관련규정에 따라 15일 이상 공개(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총리실 홈페이지, 국민생각함 등)

○ 문의처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사무처 이행점검총괄과(☎044-200-1958)